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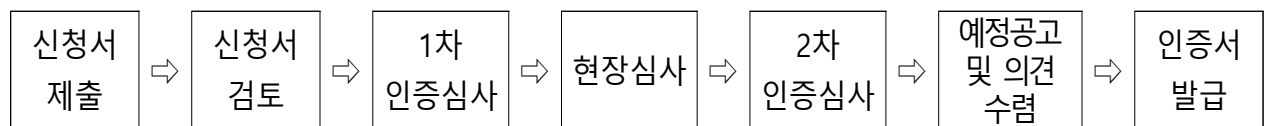
행정안전부장관

□ 인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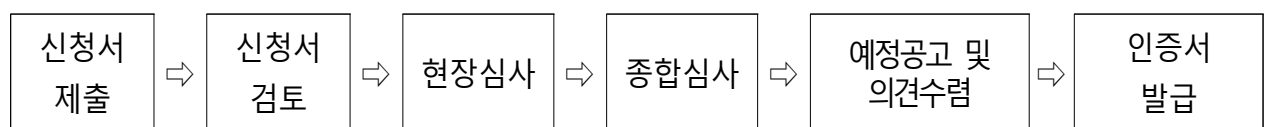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 인증 절차

- 신규·연장 인증 절차



-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 절차



※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차 인증(종합심사(필요시))에 신청인 참석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3. 11. 28.(화) ~ 12. 27.(수) 18:00
- 신청방법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는 홈페이지(www.ksis.go.kr)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저장 폴더” 를 내려받기하여 폴더에 저장 후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수수료 : (신규 신청) 무료, (연장 신청) 금50,000원
 - ※ (수수료 납부) 우리은행 1006-001-244685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 서류

번호	서류 목록	제출 구분	참고
1	신청서(신규, 연장 및 물품추가를 구분하여 작성·제출) - (신규)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 (연장) 재난안전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물품추가) 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서(인증기업에 한함)	필수	붙임1 붙임2
2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필수	붙임3
3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 ※ 기본 검토 항목 중 1개 이상 부적합일 경우 탈락	필수	붙임4
4	청렴 서약서	필수	붙임5
5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증명자료	필수	
6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 검사 자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필수	
7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필수	
8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0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 ①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②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특허증, 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를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③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 ④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 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성능을 입증해야 함
- ⑤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⑥ 접수한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되거나, 작성 미비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⑦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수수료 입금확인 증빙자료 제출)

□ 추진 일정

절차	2024년 제1회	2024년 제2회
신청서 제출	'23. 11. 28.~12. 27.	6~7월
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준비	1월	7월
1차심사	2~3월	7~8월
현장심사	3~4월	8~9월
2차심사(종합심사)	5월	10월
예정 공고 및 의견수렴	5~6월	10~11월
인증서 발급	6월	12월

※ 추진일정은 신청제품의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4, 9180, 9028	일정, 신청서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 문의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팀	053-659-1831	시스템 오류 문의

**재난안전제품 [] 인증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개월
------	------	------	-----

신청업체 개요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관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본사) (공장)						

신청제품	인증번호		제품명			
	인증유효기간		규격, 용도, 모델명			
	매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원	수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동종업체		수요처			
	연장사유 * 인증신제품과 관련한 현재의 국내외 경쟁기업·경쟁제품의 현재 수준 등 연장사유					
	신청제품인증서 분실사유 * 신청제품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인증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별표 4에 따른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	-----

신청업체 개요	업체명		대표자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공장)							

신청제품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기존 인증 제품명(모델명)		추가 등록 물품명(모델명)	
	매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원	수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동종업체		수요처	
	추가등록 사유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신청 시에는 없음
평가기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일반현황	신청제품명	한글		
		영문		
	업체명	한글		
		영문		
	주 소	한글		
		영문		
	대표자	한글	전화번호	
		영문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총 매출액 (백만원)	직전년도	총 수출액 (천\$)	직전년도
		금년실적 및 계획		금년실적 및 계획
	신청제품 매출액 (백만원)	직전년도	신청제품 수출액 (천\$)	직전년도
		금년실적 및 계획		금년실적 및 계획
	주 생산물			
	주 거래처			
신청제품 주 수요처				
동종업체	국내			
	국외			
신청제품 주 경쟁업체	국내			
	국외			
인증실적	[] 신기술/신제품 인증 [] 우수조달제품 [] 기타 기술인증 인증명(제품명)			
동일 품목의 기 인증 여부				

신청제품 설 명	용도	
	제품의 구조	
	제품 작동원리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핵심내용	

신청제품 설 명	기존 제품의 문제점 및 개선내용	기존 제품의 문제점			
		개선방법(핵심기술 및 개선결과)			
	개발기술 핵심내용	제품 주요성능	평가항목	신청제품	국내 기존제품
	국내 경쟁제품과의 기술성 비교				

신청제품 개발이력	개발방법				
	개발기간				
	개발비	천원(자체자금) 천원			
	국산화율	% (원가금액대비)			
		주요 수입품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등록여부)	등록 또는 출원번호(일자)	제목	등록 또는 출원 핵심내용 요약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질경영 체 계	상품·가공품의 품질기준 수립 및 관리	
	종업원 대상 품질경영에 교육훈련 실시	
	불합격시의 조치계획	
	해당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관장	
	기타 품질 경영 사항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 기업	업체명			
	담당자	이름		직함
		핸드폰		이메일
신청 제품	제품명			
	모델명			
	신청제품 기술분야 (택 1)	<input type="checkbox"/> 전기·전자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 <input type="checkbox"/> 기계소재 <input type="checkbox"/> 화학·생명 <input type="checkbox"/> 건설·환경 <input type="checkbox"/> 원자력·신재생 에너지		
	기술 핵심단어 (5개 이상)			
	인증대상(품목) 유형 (복수 기재 가능) ※ 참고1 참조	대분류		중분류
		용도		
		근거	※ 성적서 번호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 (복수 기재 가능) ※ 참고2 참조	대분류		중분류
세부유형				
근거		※ 성적서 번호 등		
기본 검토 항목	검토항목		적합여부 (○ / X)	근거 (증명자료 등 별첨)
	제품 출시를 위한 필수요건(강제인증 등) 획득 여부 (획득 또는 해당사항 없음 : 적합 / 미획득 : 부적합)			
	특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 (침해하지 않음 : 적합 / 침해함 : 부적합)			
	신청제품의 재난안전 기능과 관련된 타 인증제도 존재 여부 (존재하지 않음 : 적합 / 존재함 : 부적합)			
	신청제품(모델 포함)이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 했는지 여부 (특정모델 제시 : 적합 / 포괄적 제시 : 부적합)			
	신청제품이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제품에 해당 : 적합 / 소프트웨어 등 : 부적합)			
현장 품질 항목	현장심사 주소	※ 신청제품 제조 사업장, 제조공장 또는 설치장소		
	품질경영 체계 구축여부	[] 있음 (인증기간 : 년 월 일까지)		
		[] ISO9001	[] IATF16949	[]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자체)
		[] 없음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 전제품 신청 관련 사전검토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청렴 서약서(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신청제품명 :

본 사(인)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실천에 적극 협조 하겠으며,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및 인증신청 제한 등 행정제재도 감수 하겠습니다.

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 (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제공 등)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참고 1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품목) 유형

품목 분류		품목
1.자연재난 예방제품	1-1.풍수해 관련 자연재난 예방제품	풍수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1-2.지진 및 화산활동 관련 자연재난 예방제품	지진 및 화산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1-3.기타 자연재난(황사, 대설, 폭염 등) 예방제품	황사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대설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그 외 자연재난을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2.사회재난 예방제품	2-1.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제품	화재 및 폭발 발생을 사전에 진단·예측하거나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진단하거나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제품
		구조물외 전기, 가스,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점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 하기위한 제품
	2-2.교통사고 관련 사회재난 예방제품	교통·해상사고 예방제품 및 지원제품
	2-3.감염병, 화재방, 환경오염 관련 사회재난 예방제품	감염병, 화재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피복, 마스크 및 지원제품
		감염병, 화재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기타 예방제품 및 지원제품
2-4.기타 안전사고 관련 예방제품(제품재해, 범죄, 보안 등)	제품재해, 테러 등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 및 지원제품	
	제품재해 테러 등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개인 보호구 등 기타 예방제품 및 지원제품	
3.재난대응 제품	3-1.재난 상황관리 관련 제품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방송 장비 및 유지보수 등 지원제품
	3-2.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제품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
		구난용 운송 및 물품취급 장비 및 지원장비
3-3.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	
4.재난복구 제품	4-1.시설피해 복구제품	시설피해 복구 장비 및 지원장비
	4-2.재난현장 환경 정비제품	재난현장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장비 및 지원장비
		재난현장 청소장비 및 지원장비
5.기타	5-1.기타 재난안전 제품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

참고 2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

대분류	중분류	세부 유형
1. 자연재난	1-1. 풍수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우박
	1-2. 기상재난	가뭄, 낙뢰, 폭염, 한파, 황사, 오존
	1-3. 지질재난	산사태·급경사지 붕괴, 지진, 지반침하(싱크홀), 토석류, 화산폭발
	1-4. 해양재난	적조, 조수, 지진해일, 파랑, 폭풍해일, 풍랑, 해안침식
	1-5. 우주·기타재난	조류대발생, 우주재해(소행성 등)
2. 사회재난	2-1. 감염병·전염병	감염병, 가축 등 전염병
	2-2. 교통사고	도로교통, 해양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 재난·사고
	2-3. 화재·폭발	산불, 화재, 가스사고, 폭발사고
	2-4. 화학물질 사고	방사능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2-5. 미세먼지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 미세먼지
	2-6. 환경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2-7. 시설물 사고	건축·시설물, 에너지 기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용수 기반시설 사고
	2-8. 정보·전산 사고	금융전산사고, 사이버 테러
	2-9. 통신시설 사고	유선 통신설비, 무선 통신설비 사고
3. 안전사고	3-1. 산업재난사고	농어업 사고, 사업장 산재, 식품사고, 의약품 사고, 의료기기 사고
	3-2. 치안	범죄, 안전취약계층 사고, 자살, 전시테러
	3-3.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전기·가스, 등산·레저, 물놀이, 생활제품, 연안 사고
4. 기타	4-1. 기타 재난·사고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상황